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00호

2021.7.26.(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407호	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	2
제2021-411호	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	3
제2021-412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	13
제2021-413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특수판매업체(방문판매· 후원방문·다단계) 방역조치 고시	21
제2021-414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	25
제2021-415호	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	36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07호

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

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
서울특별시 장

□ 집회금지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

※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.
나. 금지기간(연장) : 2021년 7월 12일 0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

－ 당초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362호) 금지기간 : 2021년 7월 12일 0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

다. 위반 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)

라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마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바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1호

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

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(중대본 회의 '21.7.23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
서울특별시

1. 적용기간: ' 21. 7. 26.(월) 0시 ~ 8. 8.(일) 24시
2. 대 상: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, 이미용업, 숙박업
3. 내 용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집합제한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 -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 -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-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5. 업종별 방역수칙

■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26.(월) 0시부터 8.8.(일) 24시 까지 적용하지 않음
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 -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와 예방접종 완료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-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① 목욕장업 (2그룹에 해당)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
▲ 수면실 이용제한없음	▲ 수면실 이용금지	▲ 수면실 이용금지	▲ 수면실 이용금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-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 ■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■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,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■탕 안,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* *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■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*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	⑥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 ■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	
	⑧ 환기하기	
	■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⑩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시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	
	⑪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	
추가 수칙	① 대화자제	
	■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■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	■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■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
	② 공용물품 사용 자제	
	■ 공용물품(드라이기, 빗, 로션, 베개, 매트 등)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	■ 공용물품(드라이기, 빗, 로션, 베개, 매트 등) 및 선풍기 사용 자제
	③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	
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

② 이 ·미용업(3그룹에 해당)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▲ 시설면적 8㎡ 당 1명	▲ 시설면적 8㎡ 당 1명	▲ 시설면적 8㎡ 당 1명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■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	■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-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	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㉞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㉟ 손님 예약제 운영	
	㊱ 손님 음료 제공 금지	
추가 수칙	① 대화자제 ■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	■ 면도나 메이크업,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,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

③ 숙박업(기타시설에 해당)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직계가족은 예외)	▲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직계가족은 예외)	▲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▲ 전 객실의 3/4 운영	▲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▲ 전 객실의 2/3 운영
※ 객실 내 '정원'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			
▲ 제한 없음	▲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) * 홀대여는 제외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마스크 착용 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 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	■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
	⑥ 환기하기 ■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 (객실) 퇴실 후 환기	■객실 내 수시 환기
	⑦ 소독하기 ■(객실) 퇴실 후 소독 (공용공간)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 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①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	■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
	②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추가 수칙	

<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▶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▶ 대화 금지 안내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▶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▶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▶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▶ 손소독제 배치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▶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배치 자체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6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7월 26일 0시부터
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

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2호
**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
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**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홀덤펍, 식당·카페,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
서울특별시

1. 집합금지 조치

- 기 간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 ~ 2021년 8월 8일(일) 24시, 2주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홀덤펍
- 조치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2.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조치

- 기 간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 ~ 2021년 8월 8일(일) 24시, 2주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돌잔치전문점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¹⁾ 준수의무화) 조치

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26.(월) 0시부터 8.8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 -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 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1)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

○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

-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
- *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① 집단감염(10인 이상)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
- * 집합금지 기간 : 1주일

3. 영업형태 정의

○ 홀덤펍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
○ 돌잔치전문점

-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「식품위생법」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4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

-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

－ (제1항)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- ※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」에 따름
- ※ 사적모임,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」에 따름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부터
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	시설별 방역수칙 (4단계)
----	----------------

① 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 및 제과점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**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***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⑤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	⑦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-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, 출입문 개방, 환풍기 가동 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■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⑧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⑨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① 이용시간 제한 ■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	■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
	② 춤추기, 음악소리, 테이블 이동 금지 ■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■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■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	■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■ 테이블 간 이동 금지
	③ 공용집계 사용 등 ■ 공용집계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공용집계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)
	④ 코로나 선제검사 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(의무)	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이용자 선제검사(권고)
	⑤ 기타 ■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 ■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·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공연 즉시 마이크 캡 교체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	■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이용 ■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
② 돌잔치전문점		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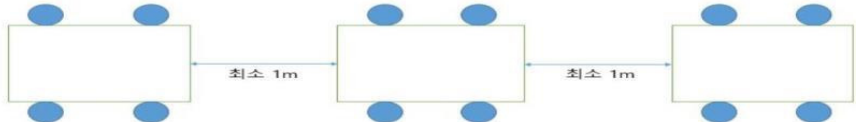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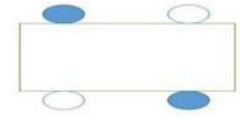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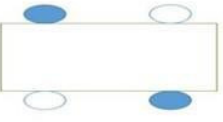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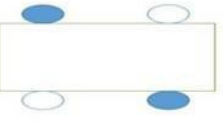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 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	■ 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
	④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유지 안내	■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(권고)
	⑥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-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, 출입문 개방, 환풍기 가동 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■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⑦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추가 수칙	① 식사 시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■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, 음식담기 위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	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■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■ 식사 시 대화 자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만남 시	
	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	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
	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	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
	③ 시설 내 공용공간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④ 코로나 선제검사	
	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(의무)	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이용자 선제검사(권고)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들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들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		
좌석 한 칸 띄워앉기		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	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		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3호

**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
특수판매업체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 방역조치 고시**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과 관련 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
서울특별시 장

1.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

- 대 상 :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 집합·판매 영업장소
- 기 간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 ~ 2021년 8월 8일(일) 24시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(방역수칙) 조치

-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26.(월) 0시부터 8.8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 ■ 음식물 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물 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
	⑧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⑪ 시설 내 공용 장소 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	추가 적용 수칙 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 8㎡당 1명)	○ (이용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 8㎡당 1명)

<시설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▶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▶ 대화 금지 안내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▶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▶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▶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▶ 손소독제 배치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▶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기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의2호~4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부과사유 :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(코로나19 등)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·이행 의무부과

다.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
라. 부과대상 :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(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)

마. 부과금액
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(1차), 300만원(2차) 부과
-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바. 효력발생일 : 2021. 7. 26.(월) 0시 부터

사. 불복절차
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.

○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고발조치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·치료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4호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

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,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고시하오니, 서울시내 종교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책임자·이용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7월 26일

서울특별시

1. 기 간 : 2021년 7월 26일(월) ~ 2021년 8월 8일(일)
2. 고시대상 :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)
3. 고시내용
 - (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) 19명 내에서, 전체 수용인원의 10%(여덟 칸 띄우기)만 참석이 가능
 - * 전체 수용인원의 10%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(20명 미만)
 - 다만,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
 -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²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함
 - *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² 1인이거나,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,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
 - (기타) 정규 종교활동 외에, 거리두기 기준(모임·행사 등 금지) 및 기본 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
 - (비대면 종교활동) 비대면 운영 시,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*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,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
 - * (필수진행인력) 영상·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■ 전체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	■ 전체 수용인원의 30% (두 칸 띄우기)	■ 전체 수용인원의 20% (네 칸 띄우기)	■ 비대면 시 : 종교활동에 필요한 필수인력 19인 이하 참석(신도 참석 불가) ■ 대면 시 : 19명 내에서, 전체 수용인원의 10%만 참석
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자제 * 모임·행사*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	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* 단,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	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* 단,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	■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※ 실외행사 시,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			※ 다만,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불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■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상시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은 불임 종교 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참조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(2단계부터 적용) ■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 정규예배·미사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유지 -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	■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- 수칙 준수하여 참여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종교활동 전/후* 반드시 환기 *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종교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* 공용책자,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추가 수칙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① 비말발생(침 튀기 많이 발생하는 행위) 금지	
	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 안내	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
	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	
	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	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	③ 시설 내 공용 장소	
	■ 휴게실, 탕비실,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(무료봉사) 운영 시, ※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,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 ■(마스크)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■(음식섭취)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-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(또는 지그재그 앉기,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) -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- 공용식기(집게 등)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- 식사 시 대화 자제 - 식사 전·후 상시 마스크 착용 ■(손씻기)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 ■(비말발생행위) 노래, 춤,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■(공용물품) 아동 장난감·책자·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·후 소독 관리 철저	■(마스크)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*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■(음식섭취)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-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(또는 지그재그 앉기,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) -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- 공용식기(집게 등)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- 식사 시 대화 자제 - 식사 전·후 상시 마스크 착용 ■(손씻기)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(또는 손소독하기) ■(비말발생행위) 노래, 춤,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■(공용물품) 공용물품 사용 자제

<방역수칙>

-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12.(월) 0시부터 7.25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 -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와 예방접종 완료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-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-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- 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5. 법적근거(처분근거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, 제49조1항제2호의2,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의3.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7월 26일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○ 담당자 :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(02-2133-2532)

붙임 :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.

붙임**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****Q1.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?**

-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

Q2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?

-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
- 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 -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 및 성가대 운영* 및 모임도 금지
 - * 성가대·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

Q3. 정규 종교활동(미사·법회·예배·시일식 등)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?

- 단계별 참여인원* 기준에 따라,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** 하여 참여
- * 1단계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, 2단계 30%(두 칸 띄우기), 3단계 20%(네 칸 띄우기), 4단계 비대면
 - ** 예)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,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
- 종교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, 개별 공간(예, 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
Q4.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가능한지?

-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체를 권고하며, 500명 이상 모임·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
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
-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·행사 등이 모두 금지*됨
 - 다만, 2~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*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**로 실외행사가 가능함
 - * 실외행사 시 식사·숙박 금지 / 마스크 상시 착용,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,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
 - ** 2단계 100명 미만(99명까지 가능), 3단계 50명 미만(49명까지 가능)

Q5.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, 정규종교활동 비대면운영만 허용인지?

-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,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·행사·식사·숙박은 금지되며, 법회·미사·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임
- 다만,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(7.16, 7.17),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%*(여덟 칸 띄우기),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,
 - * 전체 수용인원의 10%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(20명 미만)
(예: 300석→19명, 200석→19명, 100석→10명, 50석→5명)
 - **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² 당 1인으로 산정
-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(행정처분)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운영 가능
- 비대면 운영 시,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*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,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
- * (필수진행인력) 영상·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,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

Q6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?

- 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
 - 따라서,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(Q3 참고)
- 단,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
 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
Q7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(강사)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?

-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- 단, ①예방접종자인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) 설교자가 ②설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시에 한해 ③가림막(아크릴판) 설치 및 ④설교자와 신도간 3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하며(4가지 요건 모두 충족),

- ▶ 예방접종자 :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 ▶ 예방접종 완료자 :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
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- ※ 설교자를 제외한 사회자(진행자), 인도자, 참석 신도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설교자도 설교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
 ※ 가림막은 설교자 신장이상 높이로 정면과 양옆 3면이상 설치하여야 함

- 단,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“방송 출연”에 해당하여 설교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

-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(유튜브 등)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, “방송출연” 적용은 곤란함
- 단, 사적 공간(별도의 분리된 공간)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
 - ※ ‘마스크 착용’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Q8.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(연합단체) 주관의 기관운명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?

- 종교시설의 재정(회계),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
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소독, 음식섭취 금지,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,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·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

Q9.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(장소)을 빌려서 행사(결혼식, 장례식 등)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?

-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·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, 결혼식은 ‘결혼식장’, 장례식은 ‘장례식장’, 공연은 ‘공연장’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
- *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‘식당’ 방역수칙 적용

Q10.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·숙박이 가능한데,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?

- 종교시설 주관 모임·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,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*하되
- * 실·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,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큰소리로 함께 기도·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
-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, 식당·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
-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,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

Q11. 종교시설 내 관리자·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?

- 종교시설의 책임자·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
- 단, 교인,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

Q12.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?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

Q13.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

-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
-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,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, 소모임 등도 금지됨
- * 다만, 시민단체·법인·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

Q14.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?

-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, 종교시설 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~4단계 운영 가능
 - *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 먹기, 노래·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
 -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
 - 다만, 아동·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,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(수강료, 이용료 등 납부)로 운영되는 보육활동·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
 - ※ 교리·목회자 양성,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,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/대안학교(학원수칙 적용),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

Q15.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?

-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
 - ※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

Q16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?

- 백신 접종자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)*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,
 - * (예시)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
 - 접종완료자*(2차 접종 후 14일 경과)로만 구성된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하고 2m(최소 1m)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·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
 - *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,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
 - ※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(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,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)은 1~3단계 적용,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

Q17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2~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?

-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~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
 - * (예시) 식사·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,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→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

◆ **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5호**

**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
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
등 방역조치 고시**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2그룹 시설 중 노래연습장, 3그룹 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적용기간 : 2021년 7월 26일 (월) 0시 ~ 2021년 8월 8일 (일) 24시
2. 적용단계 :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
3. 적용대상 :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 - 서울시 소재 2그룹 시설 중 노래연습장
 - 서울시 소재 3그룹 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 등, 직업훈련기관, 대형마트·백화점·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*
 - * ①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 중 ‘한국표준산업분류’ 상 종합소매업
 - ②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규정(제2조 제3호)에 따른 대규모 점포(※도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제외)
(예 : 대형마트, 특정 품목(의류·가전·가전용품·서적 등)에 특화된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공구·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)
 -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(대리점)
4. 적용내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■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26.(월) 0시부터 8.8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(사적모임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 -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- (직계가족) 2021.6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

* 예방접종 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
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□ 노래(코인) 연습장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시설 면적 6㎡ 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㎡ 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㎡ 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㎡ 당 1명 인원 제한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4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
	④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⑥ 손씻기	
	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환기하기	
	■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*(10분 이상) *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간 환기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**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	
추가 수칙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⑪ 마이크 사용 등	
	■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☐ PC방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좌석 띄우기 없음	▲ 좌석 한 칸 띄우기 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	▲ 좌석 한 칸 띄우기 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	▲ 좌석 한 칸 띄우기 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동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	■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⑥ 손씻기	
	■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환기하기	
	■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⑦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	
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①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	
	■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	■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
	② 공용공간	
	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□ 영화관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좌석 띄우기 없음	▲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	▲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	▲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공통 수칙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 ■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⑥ 손씻기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	■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
	⑧ 환기하기 ■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■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	⑪ 상영관 외부 ■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	■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취식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
추가 수칙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② 대중음악 등 관람 시 ■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 ■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■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하지 않기 ■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■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
□ 오락실·멀티방 등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시설 면적 6㎡당 1명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	
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
	⑥ 손씻기	
	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 가능 인원 제한 적용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안내	■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(권고)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	
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
□ 직업훈련기관(일반)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 면적 4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▲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▲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▲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 ■ 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 안내	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(권고)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추가 수칙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 종사자 일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	① 전일제 경우 식사	
	■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	
	② 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
□ 직업훈련기관(기숙형)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 면적 4㎡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▲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▲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▲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
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기숙시설 운영금지,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<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> ① 입소자 (공통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 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 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 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 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 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 안내 -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	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(권고)
	⑧ 환기하기 ■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 ■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 ■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종사자 일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추가 수칙	① 입소자, 종사자,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 ■입소자 외출 및 증감 이동 자제 안내	■입소자 외출 및 증감 이동 자제
	■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	■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
	② 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 ■공용공간 수칙 적용	

□ 대형마트·백화점·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(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)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
▲ 2m(최소1m)이상 거리두기	▲ 판촉용 시음·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건본품 제공 금지 ▲ 휴게공간 이용금지 ▲ 집객행사 금지 ▲ 출입자 발열체크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⑤ 밀집도 완화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-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, 방문예약제 등 적극활용(권고) -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■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(권고)	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(권고) - 대기 시에도 2m(최소1m) 간격 유지, 방문예약제 적극활용
	⑥ 환기하기 ■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,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소독하기	
	■ 일 3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드) 등	
	⑧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추가 수칙	①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	
	■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	■ 휴게공간 이용 최소화
	③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	
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■ 문화센터의 경우 강의실 당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6㎡당 1명 또는 이용자 간 2m 이상(최소1m) 간격 유지 안내 * 노래, 관악기연주, 댄스, 체육 강좌 등은 자제(권고)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■ 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 전 이용 가능 인원 확인 및 이용자 간 2m 이상(최소1m) 간격 유지(권고)

□ 쿨센터

서울시 단계별 기준			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3 권고	▲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3 권고	▲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2 권고	▲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2 권고
▲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	▲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	▲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강력 권고	▲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강력 권고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(의무)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	■ 방역수칙 준수(의무)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
	③ 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	
	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(의무)	
	■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(의무) ■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	■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(의무)
	⑤ 음식섭취 자제	
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을 자제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
	■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(의무)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	
	■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(의무) 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-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(운영대장 작성) *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	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- 조별 식사시간 준수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

구분	방역관리자·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·방문자 수칙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하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■ 회의,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책자,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,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■ 개인별 사무공간(책상 등)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■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 소독 후 사용하기
추가 수칙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(의무) ■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의무) ■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(의무) * 증상 유무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■ 증상확인 협조 ■ 증상 있을 경우,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
	① 근무형태	
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■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,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-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■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
	②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출장, 행사	
	■ 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실시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안내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■ 출장 최소화 하기,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참여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
	③ 구내식당, 통근버스, 기숙사, 시설내 공용공간	
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

□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

구 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▶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▶ 대화 금지 안내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▶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▶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▶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▶ 손소독제 비치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▶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비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(' 21. 7. 7.)됨에 따라 시설별(기본) 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6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시 고발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－ 시설 운영자 방역지침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지침 위반(10만원)
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*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(운영시간 제한 등)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

*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(' 21. 7. 8. 개정·공포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7월 26일 0시 부터
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
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
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
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
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
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
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10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(대형유통시설 02-2133-5258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(직업훈련기관 02-2133-5463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(콜센터 02-2133-5248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(노래연습장 02-2133-9219,
PC방·오락실 02-2133-9217, 영화관·멀티방 02-2133-9220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